

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0년 5월 15일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및제출자 : 2000. 3 . 17 김완규의원의 3인
- 나. 회부일자 : 2000. 5. 15
- 다. 상정일자 : 제76회 평창군의회(임사회) 제1차조례특위(2000.5.15)
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김완규 의원)

가. 제 안 이 유

- 지방의회 정기회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부합된 조례를 정하기 위함.

나. 주 요 골 자

-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(안 제2조)
-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(안제3조)
- 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, 제2차 정례회는 12월 1일 집회(안제3조)
-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, 결산안의 승인, 기타 부의안건,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 및 기타 부의안건 심의·의결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박태영)

□ 관계법령

○ 지방자치법 제38조(정례회)

-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.
- ② 정례회의 집회일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□ 내용검토

-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4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의회 의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
- 그간 의원간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짐
- 그밖의 법령형식·자구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필요한 사항 : 없 음

붙임 : 의안 원안1부 . 끝.